

## 12.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9-25호 1999. 3. 11.

### 개 정 취 지

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(1998. 12. 28, 법률제5,584호 : 1998. 12. 31, 대통령령 제15,976호)됨에 따라,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개정하고, 기술·인력개발 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2000년 문제 해결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### 주 요 내 용

- 가. 컴퓨터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·변환 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 인건비를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포함하도록 함.
- 나. 천연가스충전용 가스압축장치 등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.
- 다.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종전에는 양도대금으로 생산성향상시설 등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.
- 라.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·공채의 범위에 국민은행채권을 포함하도록 하

되, 종전의 장기 신용은행채권의 차환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.

- 마.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함.
- 바. 당초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배제되고 있으나, 세대 전원이 취학·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.
- 사.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집행관 및 공증인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.
- 아. 감면신청서 등 서식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.

주택회보